

천안함 보도를 통해서 본 재난보도의 실상과 인격권

김 동 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다시 대두돼

재난 현장의 취재는 일상적인 취재보다 훨씬 어려운 반면 뉴스 수요는 폭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 선정적이고 눈길을 끄는 뉴스 아이템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는 일선 기자들에게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준수와 기자정신의 재무장이 더욱 강조된다.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보도, 재발 방지책 제시, 희생자 위로, 참혹한 내용 자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자 참사인 이번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언론계 안팎에서는 우리 언론의 천안함 보도가 저널리즘의 정도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천안함 보도는 대상이 군이어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연이어 발생한 대형 참사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볼 때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즉, 해군의 자국 연안 경계 및 순찰 임무를 주목적으로 하던 초계함인, 북한 어뢰공격이라는 정부의 최근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원인 모를 이유로 침몰로 했기 때문에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한편으로는 46명의 실종자와 1명의 수색해군의 순직, 그리고 천안함 수색을 돕던 9명이 탄 어선의 침몰로 이어진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대형 참사였다(김수정, 2010. 5).

이렇듯 여러 사건과 정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안함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접근과 정

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요구되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뉴스는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근이 어려운 군 당국이 취재원이 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조차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보도로 무분별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으며, 잘못된 정보가 사실이 되어 신문에 실리거나 방송에 내보내지기도 했다. 아울러 폭증하는 뉴스 수요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정보의 추가 수집을 위해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추가 취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됐고 군 당국은 물론 실종자 가족들과 취재진 사이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 나타난 보도상의 문제점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보도는 이른바 ‘가정법 보도’ 시리즈가 등장하는 등 추측성 보도가 남발돼

먼저 불확실한 정보에 바탕을 둔 추측성 보도의 남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확성과 신중함이 최우선이었지만 속보와 취재 경쟁에 치우쳐 확실한 근거가 없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도형래(2010)가 사건 발생 초기 2주 동안의 방송 3사의 관련보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사건 초기 2주 동안 139번에 걸쳐 침몰 원인에 대한 보도가 등장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9.92번에 해당한다. 즉, ‘자체 결함설’, ‘북한 도발설’, ‘유실 기뢰설’, ‘원인 미상설’, ‘암초에 의한 좌초설’,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 충격설’ 등 각기 다른 추정을 매일 10여 건씩 쏟아낸 셈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도발설’과 ‘자체 결함설’ 같이 양립이 불가능한 추정을 동시에 내놓기도 하였다. 충분한 검증이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사보다 먼저 보도해놓고 보려는 속보경쟁과 특종 위주의 보도관행이 이번에도 한 몫을 크게 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보도에는 유별나게 기사쓰기에 이른바 ‘가정법 보도’ 시리즈가 자주 등장하였다. 바로 ‘~라면’ 보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침몰 원인이 △△어뢰라면 이번 사건에 북한은…….’ 식으로 그동안 뉴스에 등장한 침몰 원인만 해도 암초에서부터 음향어뢰, 근접신관 어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추측한 원인은 이틀도 채 가지 못하고 허위로 밝혀지는 일들이 허다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10가지가 넘는 설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웃지 못할 황당무계한 설은 길이가 18미터나 되는 대왕오징어가 머리로 배의 하단을 꿰고 찢었다는 설이었다.

이렇듯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추측보도가 남발되다 보니 취재원인 해군 당국이 9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군 측이 제시한 정정보도 이유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 “해경 직원의 개인적 의견을 근거로 보도했다”, “개인의 감정을 근거로 썼다”, “의도를 갖고 썼다” 등이다.

〈표〉 해군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현황

매 체	보 도 일 자	보 도 내 용	해군이 주장한 청구 사유
경향신문	3월 31일 4면	매뉴얼도 없는 해군 ‘시간과의 싸움’ 뒷북·즉흥 내용	군에서 사실관계 밝혔음에도 사실 아닌 보도
국민일보	3월 29일 1면	“해군 손 못 쓰고 해경이 구조”	해경 직원 개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동아일보	3월 31일 6면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해경 관계자의 부정확한 언급을 인용해 보도
문화일보	3월 30일 6면	낡은 어군탐지기만도 못한 첨단 해군	민·관·군·경의 합동대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사실 아닌 내용보도
서울신문	4월 8일 5면	실망하다 절망한 가족들	일부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
세계일보	4월 14일 5면	함미 이동 숨기려다… 군. 또 불신 자초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조선일보	4월 29일 5면	대양해군 외치는 사이 앞바다가 뚫렸다	일부 개인의 의견과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
한겨레신문	4월 5일 6면	항로·함미 발견 등 은폐·왜곡… 못 믿겠군	조사 과정 중 일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른 의도를 갖고 보도

* 출처 : 중앙일보 (2010. 5. 12)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재난위기관리체계 부재가 언론보도의 혼란 더욱 도당해

한편, 천안함 사고에 지면과 뉴스 분량을 과다하게 배정·편성하는 ‘물량 공세식 보도’도 논란거리로 등장하였다(김수정, 2010). 한마디로 보도의 양적 과잉과 질적 부족이었다. 추측성 보도와 비슷한 단순 기사가 매일 엄청난 양으로 전달되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도한 확대 재생산은 선거 정국과 맞물려 해당 이슈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까지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재난 위기관리 체계가 부재한 것도 언론보도의 혼란을 조장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나타난 정부와 군 당국 간의 혼선이 대변해주듯이 일사불란하게 사고 수습과 정보 전달에 나서야 할 정부부터 이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억측과 추측 보도가 난무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언론보도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감상주의의 과잉’이다. 아직 침몰 원인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는 희생자들을 무작정 ‘영웅’, ‘전사자’, ‘고귀한 희생’ 등으로 수식하기 바빴다. 희생 장병들에 대한 추모는 당연하겠지만 뉴스만큼은 성급한 감상주의보다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건을 보도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특히 모 방송은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 모금 생방송을 전개하고 이를 9시 뉴스의 톱으로 다뤄 소위 ‘분위기 띄우기’에 너무 열중했다는 내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KBS공방위보고서, 2010. 4. 10).

한편 이번 참사보도에서도 여전히 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사실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 시비는 빠지지 않고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인 보도로 사고 현장의 처참한 모습과 피해자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외에 자극적인 접근이나 인터뷰, 얼굴 및 클로즈업 촬영 등은 자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과열 취재경쟁으로 일부 언론사가 실종자 가족에게 무분별하게 접근했던 것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존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한 기자가 생존자 가족들에 의해 발각되고, 더 나아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리한 취재를 요구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한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과 해군2함대 사령부 김태호 정훈공보실장은 30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실종자 가족을 실은 백령도행 성남호에 일부 언론사 기자가 가족으로 위장, 탑승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정상적인 취재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취재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언론이 군함 내부를 찍은 것도 있다며 이 같은 취재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다.”(미디어오늘, 2010. 3. 31.)

“한 방송사 기자가 실종자 가족에게 무리하게 취재요청을 해 이 가족이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했다. 해당 지구대 경찰은 ‘실종자 가족 중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지난달 31일 방송사 기자가 가족을 괴롭힌다며 신고했다’며 ‘실종자 가족 자녀에게 무리하게 취재를 요구하다 이를 보다못한 어르신이 화가 나서 신고한 모양’”(미디어오늘, 2010. 4. 7.)

언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자와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돼

최근에는 특정 언론사가 고인이 된 희생자 어머니와의 인터뷰 기사를 잘못 내보내 해당 언론사는 숨진 어머니도 살려내는 언론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즉,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유가족들의 반응을 전달하는 기사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예상한 일... 허탈”』에서 “고 문○○ 중사의 어머니는 합조단의 발표를 들으면서 사고 당시 아들이 겪었을 끔찍한 상황이 다시금 떠오르는지 떨리는 목소리였다”, “문 중사 어머니는 ‘당연히 북한(의 소행)일 것으로 생각했다. 북한이 아니라면 누구겠느냐’라며 ‘그래도 공식 발표를 들으니 기가 막히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라고 했다”

고 전했다. 그러나 문 중사의 어머니는 이미 고인으로, 해당 언론사도 이전 자사 사진기사에서 “고 문 하사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다(미디어오늘, 2010. 5. 21).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 태도는 사고 현장의 특출한 모습을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자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의 얘기를 보도하는 것은 독자와 시청자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 사회를 통합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은 희생자와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언론 보도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서도 곤란하다(김재영, 2003). 그러나 이번에도 피해자 가족 취재는 도를 지나쳐 침몰 사고 닻새째인 지난 4월 30일에는 실종자가족협의회가 눈물을 흘리며 아예 언론에 자제와 배려를 호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추측보도 및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도 자제 △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용한 비인도적인 취재하지 말 것 △영외 가족 특히 연로한 가족에게 무리하게 취재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참사 보도 때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그러나 알권리가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취재와 보도를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개 알권리가 타인의 명예나 인권(개인적 법익),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국가적 법익)를 침해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알권리의 실현이 과도하게 개인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이 요구된다(이재진, 2006 : 38-39).

이제부터라도 재난 보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언론계가 적극 나서야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언론의 노력은 그동안 없었는가? 기실 주요 언론사들마다 그 핵심 방안으로 재난보도 지침이나 준칙 마련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KBS와 SBS는 재난·재해보도지침, MBC는 재해방송 보도준칙을 통해 관련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재해, 재난의 보도기관인 동시에 방재기관이라는 인식 하에 취재와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무분별한 촬영을 금한다 △관리기관이 설정해 놓은 폴리스라인, 포토라인을 준수한다 △무분별한 취재경쟁을 자제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2003년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였다. 당시 초안에는 △피해상황 전달보다 향후 전개될 추가 피해 예방 및 방지 주력 △재난구조본부에서 정한 통제선 준수 △불확실한 내용의 검증 및 유언비어 발생과 확산 억제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 명예, 심리적 안정의 보호 등의 내용

이 담겼다.

문제는 이렇듯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 또는 지침이 마련돼 있으나 현장 기자들은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장 기자들 대부분은 준칙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나 알면서도 취재경쟁이나 보도관행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강변한다. 즉, 피해자 가족들에게 카메라 들이댄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속보경쟁과 그런 꼭지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하는 보도관행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취재경쟁에 번번이 구멍이 뚫리고 마는 재난보도 준칙의 한계가 이번 천안함 보도를 통해 다시 재론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는 그만큼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현장에서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재난보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언론계가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수정 (2010. 4). 주요 신문의 천안함 참사 보도 진단. 문화연대 외 주최 세미나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 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발제문.
- 김재영 (2003). 참사보도에 매몰된 인격권. 『언론중재』, 23권 2호, 70-75.
- 도형래 (2010. 5). 서해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방송 3사의 보도 분석. 한국방송학회 봄철학술대회 발표집.
- 이재진 (2006). 『언론자유와 인격권』 한나래.